### 아름다운 이 수 행복한 시 교

제2020-85호 2020년 5월 8일(금) 시



보

### 시정지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 고 시

이 여수시 고시	제2020-1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3
이 여수시 고시	제2020-149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4

### 공 고

_		I		
C	여수시 공고	제2020-1171호	수용(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5
C	여수시 공고	제2020-1173호	도로지정 공고(용주리 신209-6)	9
C	여수시 공고	제2020-1174호	도로지정공고[만흥동 1051-1번지]	10
C	여수시 공고	제2020-1177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11
C	여수시 공고	제2020-1183호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C	여수시 공고	제2020-1184호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 기 타

회				
람				

여수시 고시 제2020 - 14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실시계획	시형	냉 자	사업착수	사업준공	점용·사용	7 JUIS
(신고) 번호	승인 (신고)수리	주 소	성 명	예 정 일	예 정 일	장 소	공사내용
2020- 5	2020. 5. 8.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관광과)	2020. 5.	2021. 3.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산160번지 지선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사업

2020. 5. 8.

여수시 고시 제2020 - 149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준공검/	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	준공검사 확 인 증	공사내용
(허가(승인)일)	주 소	성 명		()	교부일자	
2018-85 (2018.10.18.)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547-2번지 지선	1,406.4	2020. 5. 8.	돌산읍 항대마을 어장진입로 및 선착장 연장공사

2020. 5. 8.

## 수용(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YNCC#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5. 8.

□ 사 업 명: 154kV YNCC#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열람기간 : 2020. 5. 8. ~ 2020. 5. 22 (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 061-659-3611 ※사업시행 내용 문의처 : 한전 광주전남본부 사무실 ☎ 062-260-5724	
□ 의견제출기간 : 2020. 5. 8. ~ 2020. 5. 2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205-9번지 등 총 4필지(450㎡) - 토지소유자 : 금*****주식회사(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8) 등 5등 - 관 계 인 : 해당사항 없음	甘つ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목록(지 장 물)

#### [별지 제1목록]154kV YNCC#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	수용지장	물 의 표 시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m²)	전 가 / 금액	/ 성명 주소		단 가 / 성 명 주 소 성 명 /		주 소
1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205-9	구분지상권 상공 22m~34m	266 m² x74262/100000 0	36,445 719,920	금****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8 (등)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 시그니쳐타워스 서울)			
2	u	205-10	п	15 m² x331209/44600 00	36,445 40,590	" "				
3	"	205-11	"	142m² x1342657/1808 0000	114,005 1,202,200	" "				
4	"	205-13	n n	27 m² x1413205/1903 0000	114,005 228,580	"	"			
					2,191,290	소계(4)건				
1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205-9	구분지상권 상공 22m~34m	266 m <sup>2</sup> x314488/10000 00	36,445 3,048,760	대***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2	"	205-10	п	15 m² x1402616/4460 000	36,445 171,920	"	"			
3	"	205-11	п п	142 m² x5685943/1808 0000	114,005 5,091,150	" "				
4	"	205-13	n n	27 m <sup>2</sup> x5984707/1903 0000	114,005 968,030	. "	п			
					9,279,860	소계(4)건				

###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목록(지 장 물)

#### [별지 제1목록]154kV YNCC#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	수 용 지 장 는	물 의 표 시	I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 유 자	:	관 계 인
번 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m²)	대 단 가 / 금액	성 명	주 소	성 명 / 권리의종류	주 소
1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205-9	구분지상권 상공 22m~34m	266 m² x330556/10000 00	36,445 3,204,530	롯****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129 (등)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2	n	205-10	"	15 m <sup>2</sup> x1474280/4460 000	36,445 180,700	n	"		
3	11	205-11	" "	142 m <sup>2</sup> x5976453/1808 0000	114,005 5,351,270	п	п		
4	"	205-13	"	27 m² x6290481/1903 0000	114,005 1,017,490	"	n .		
					9,753,990	소계(4)건			
1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205-9	구분지상권 상공 22m~34m	266 m² x4231/1000000	36,445 41,010	주식회사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55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여의 도동)		
2	11	205-10	" "	15 m² x18870/446000 0	36,445 2,310	п	п		
3	"	205-11	"	142 m² x76496/180800 00	114,005 68,490	n	n		
4	11	205-13	" "	27 m <sup>2</sup> x80516/190300 00	114,005 13,020	n	п		
					124,830	소계(4)건			

###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목록(지 장 물)

#### [별지 제1목록]154kV YNCC#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수용지장	물 의 표 시	I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 유 자	ă	<b>관 계 인</b>
번 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m²)	대기 기 단 가 / 금액	성 명	주 소	성 명 / 권리의종류	주 소
1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205-9	구분지상권 상공 22m~34m	266 m² x276463/10000 00	36,445	한****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등)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2	"	205-10	11	15 m <sup>2</sup> x1233025/4460 000	36,445 151,130	11	п		
3	"	205-11	"	142 m <sup>2</sup> x4998451/1808 0000	114,005	"	п		
4	п	205-13	п.	27 m²	114,005	11	11		
					8,157,820	소계(4)건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4건			29,507,790	5인		0인	

### [여수시 공고 제2020 - 1173호]

##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산209-6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 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지정 공고 내역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	계	44	7	266		
화양면 용주리	산209-6	44	7	266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8.

#### [여수시 공고 제2020 - 1174호]

##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만흥동 1050-1번지 외 2필지(1050-2, 1051-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로위치	도로길이 (m)	医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भी उर
만흥동 1051-1	27.97	1.86	52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7.

### 여수시 공고 제 2020-1177호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수산업법」제1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연장 허가	어업의 종류	면적	어장	며청기가	연장허가	수산자원 조성금	어 업 권 지	; <del> </del>	비고
번호	번호	0 II (양식방법)	(ha)	위치	면허기간	기 간	조성금 (천원)	주 소	성 명	
10299	2020- 72	마을어업	25	돌산 군내	2010.06.07. 2020.06.06.	2020.06.07. 2030.06.06.	-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송도 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0. 5. 08.

여수시 공고 제2020-1183호

## 공 고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취지

- 상위법령의 필수 위임사항 반영
- O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 O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허가·신고 수수료 기준 신설

###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의 서류 제출 등(안 제2조)
  - 허가 및 신고 시 원색사진, 설계도서 미제출 대상 중 네온류, 전광류, 디지 털광고물 제외
-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안 제5조)
  - 연장허가 대상인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을 연장신고로 처리
  -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신고대상은 연장신고 불필요

### ○ 전자게시대의 관리(안 제14조)

- 전자게시대 관리 · 운영 및 비용징수 방법은 시장이 공고하도록 지정
-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 신호등과 30미터 이내 지역도 설치가능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별표 1)
  - 현수막 : 일반형(가로형) 현수막 2매당, 족자형(세로형) 4매당 5천원권 1매
  - 전 단: 1,000매 당 → 500매 당 5천원권 1매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수수료(별표 2)
  -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1개소(1가로등주) 당 6,000원
- 3. 개정 조례안 : 별첨
- 4. 입법예고기간 : 2020. 5. 8. ~ 5. 31.(23일간)

###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O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O 기타 의견
-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번호 061-659-4541)
-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시청동1길 23, 여수시청 도시재생과) (59675)
  - 업무담당자 : 도시재생과 박종석(bobpak@korea.kr)

##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재생과(전화 061-659-4541, 팩스 061-659-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	$\Box$ 2	조례 명	:	여수시	옥외광고물	둥	관리조
-------------------------	----------	------	---	-----	-------	---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이거(지)	기디 친구 가치
조네인 영국할 내용	찬성	반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 여수시 조례 제 호

##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제5조제1호의 '영 제3조제1호'를 '영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영제3조제3호'를 '영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영 제3조제6호'를 '영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4조의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 '전자게시대의 관리 및 광고의 표시'를 '전자게시대의 관리 • 운영 및 광고의 표시'로 변경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 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현 수 막	일반형(가로형) 현수막 2매당 족자형(세로형) 현수막 4매당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벽 보	30cm×40cm 이상 50장당 30cm×40cm 미만 100장당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전 단	500장당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별표 4]

## **광고물등의 허가 · 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m² 이하	3,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m² 이하	3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15,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 · 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 약국 표지등(개	8,000원
당)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m² 이하	35,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15 00001
- 면적 10㎡ 이하 면적 10㎡ 초기사 1㎡마다 단하는 그래	15,000원 2,000의
- 면적 10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입간판	3,000원

사. 애드벌룬	15 0000]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 ,,,,,,,,,,,,,,,,,,,,,,,,,,,,,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0,000원
금액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4,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 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파. 현수막	
1) 현수막	_
- 10m²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1,000원
- 10m² 이하	7,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3) 가로등 현수기	
- 1개소(1가로등주) 마다	6,000원
하. 벽보(50매마다)	3,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3,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다.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등 수수료의 2배를 저요(저자게시대는 제이)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한다)을 말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 고의 제출서류 등) ①
1. ~ 6. (생 략)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시·군· 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말한다. 다만, 디지털광고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1.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 용 가판 용 가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 2.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출간판 3.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으 3. < 현행과 같음 > 로서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해당 하는 것 및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 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4.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파 이용 간판 5.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류 5. < 현행과 같음 > 제14조(전자게시대의 관리) 제14조(전자게시대의 관리)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설 | ① <현행과 같음> 치된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자게시대 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자게시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② <삭 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자게시대의 관리 및 광고의 표시에 따 ③ 전자게시대의 관리 • 운영 및 ----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공고하는 바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에 따른다.
④ <신 설>	④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
	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
	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
	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
	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
	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工 6 口	
     현 수	- սե	5m² 이상 현수막 2매당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선 7	- <del>'</del>	5m² 미만 현수막 4매당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벽	보	30cm×40cm 이상 50장당 30cm×40cm 미만 100장당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전	단	1,000장당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 [별표 1]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류		규 격	보 상 금			
현 4	는 막	일반형(가로형) 현수막 2매당 족자형(세로형) 현수막 4매당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벽	보	30cm×40cm 이상 50장당 30cm×40cm 미만 100장당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전	단	500장당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 1매 (오천원권)			

혅 행 개 정 아 [별표 4] [별표 4]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광고물등 수수료 파. 현수막 파. 현수막 1) 현수막 1) 현수막 - 10m² 이하 3,000원 3,000원 - 10m² 이하 1,000원 - 10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 1,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 액 액 2) 현수막 게시시설 2) 현수막 게시시설 - 10m² 이하 7,000원 7,000원 - 10m² 이하 1,500원 - 10m<sup>2</sup> 초과시 1m<sup>2</sup>마다 더하는 금 1,500원 - 10m<sup>2</sup> 초과시 1m<sup>2</sup>마다 더하는 금 액 액 3) 가로등 현수기

- 1개소(1가로등주) 마다

6,000원

여수시 공고 제2020-1184호

공 고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 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제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시기 등 실무담당자가 하는 업무를 상 위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여수시 성별영항평가 조례"로 변경

- **각 조의 용어 변경** (안 제1조~제13조, 제15조~제1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조항 개정 (안 제5조, 제7조)
  - "세출예산 단위사업"을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간사 조항 개정(안 제15조)
  - "간사는 분석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성별 영향평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여수시장이 지명한다"로 개정
- 3. 개정 조례안 : 별첨
- 4. 입법 예고기간 : 2020. 5. 8. ~ 5. 28.(20일간)

####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8일까지 다음 시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여성기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여성가족과장)
- 전 화 : 061-659-3743 팩스 : 061-659-5822
- 이 메일: xinniang@korea.kr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1172 072 110	찬성	반대	ㅋ 교(기표)	719 百五八百

##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여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분석평가"라 한다)의"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실시"를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제1항4호 중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본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세출예산 단위사업"을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본 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성별영 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고, 같은 조 본 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를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여수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여수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분석평가업무"를 "성별영향평가업무"로 하고, 제3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분석평가업무"를 "성별영향평가업무"로 하고, "담당주사가 된다"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여수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 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 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수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수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